

「생애주기별 강좌나르미」 사업지침

제정 2021.04.07.

일부개정 2022.01.10.

개정 2023.03.13.

제1장 총칙

제1조(정의) 「생애주기별 강좌나르미」(이하 강좌나르미)란 경남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즐길 수 있도록 희망하는 장소에서 강좌를 제공하는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서비스를 말한다.

제2조(교육방식) ① 강좌나르미 수업은 대면수업(주간 수업, 야간 수업, 현장 수업)과 방송·통신에 의한 수업(이하 원격수업)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② 원격수업의 경우 수업활동의 70%이상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강좌를 말한다.

제2장 강좌, 시간, 장소 등

제3조(강좌분류) 강좌는 기초문해교육, 학력보완교육, 직업능력교육, 문화예술교육, 인문교양교육, 시민참여교육으로 분류한다.

제4조(교육시간) ① 강좌별 교육시간은 1일 3시간(단, 만 13세 미만의 유아동의 경우 2시간)까지 가능하며, 그 이상 필요 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1시간당 대면수업은 50분 기준으로 하며(만13세 미만의 유아동의 경우 40분), 원격수업의 경우 40분을 기준으로 한다.

③ 대면수업이 3시간 이상 연속일 경우, 1회 이상 10분 휴식을 실시한다.

④ 원격수업은 시간당 10분의 의무휴식시간을 가진다.

제5조(교육장소) ① 교육장소는 경남배움터, 경상남도내의 공공시설, 직장, 사회복지시설, 마을회관, 경로당 등 학습자가 해당 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강사의 사설근무지, 개인교습소 등에서의 강의는 금지한다. 단, 시설이용 등의 문제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진행한다.

제3장 학습자

제6조(신청자격) ① 학습자는 해당 지자체에 거주 또는 재직 중인 누구나 가능하며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.

② 학습자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신청, 타인명의 도용 및 구성원의 동의 없이 강좌를 신청한 경우 해당 강좌는 취소한다. 단, 만13세 미만의 유아동, 장애인, 만65세 이상 등 홈페이지의 강좌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, 기관담당자 등 대리신청이 가능하다.

③ 학습자는 강좌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선택할 수 있으나, 강사의 선정 및 배정은 해당 지자체의 권한으로 한다.

제7조(수강료 및 재료비)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재료비 및 교재비가 발생할 경우에는

학습자가 부담하되 강사와 학습자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책정한다.

제8조(강좌신청) 강좌 신청 시 강좌명, 강좌내용, 교육시간, 교육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.

제9조(강좌신청 제한) ① 학습자는 전년 출석률 70%미만으로 폐강이 된 경우 강좌를 신청할 수 없다.

② 학습자 개인 및 단체, 기관은 정치, 영리 및 종교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강좌를 신청할 수 없다.

제10조(준수사항) ① 학습자는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출석 불성실 등의 이유로 강좌가 중지될 경우에는 차년도까지 강좌를 신청할 수 없게 제한할 수 있다.

② 학습자는 지각 및 결석이 5회 이상 계속될 경우 참여하는 강좌를 포함, 향후 1년 간 강의를 신청할 수 없게 제한할 수 있다. 지각은 강좌 시작 시간 20분 이후에 참여한 경우를 말한다.

③ 강좌는 학습자 전체 출석률이 3회 연속 70% 미만일 경우 폐강할 수 있다.

④ 단, 신청자가 질병, 입원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강을 할 수 없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고, 증빙자료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학습자는 교육장소로 경남배움터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.

제4장 강사

제11조(강사자격) ① 강사는 ‘강좌관리시스템’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다음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증 소지 후 강의 경력이 50시간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인 자

2. 해당 분야의 강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

3. 기타 (재)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(이하 진흥원) 및 해당 지자체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

② 강사는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. 단, 부득이한 사유로 강사를 구할 수 없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.

③ 강사가 해당 지자체와 협의 없이 강좌를 중단한 경우는 차년도 강사지원을 할 수 없다.

④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좌의 강사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화를 실시하고,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만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.

제12조(강사등록) ① ‘진흥원’ 홈페이지에 강의계획, 경력, 자격 등을 등록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.

② 서류 마감 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서류접수의 취소가 불가능하며, 기타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.

제13조(강좌운영계획) ① 강사는 학습자의 강좌 신청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학습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 강좌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강사는 교육장소 및 운영계획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학습자들의 동의를 얻어 해당 지자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강의의 장소, 시간, 내용 등 변경은 3회에 한하며(단, 특수 대상 및 상황에 한해 변경요청은 5회까지 가능), 해당 지자체에 사전 보고 없이 변경하여 진행하는 경우 강좌를 폐강할 수 있다.

제14조(학습자 관리) ① 강사는 강의시간을 준수해야 하며, 학습자관리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. 이를 어길 시(예 : 지속적인 강좌 시작시간 지연 및 시간단축, 출결 조작) 해당 지자체에서 강좌를 폐강할 수 있다.

② 강사는 학습자의 서명을 받아 출석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종강 후 원본은 해당 지자체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강사는 현장사진을 포함한 학습일지 및 출석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매회 강의 종료 후 24시간을 넘기지 아니한다.

④ 학습일지 및 출석부 제출 기한을 3회 이상 지키지 않을 경우, 향후 강사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
⑤ 강사는 학습자가 부담하는 재료비 또는 교육장소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 및 상호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.

제15조(강사료) ① 1시간을 기준으로 40,000원으로 한다. 강사료 지급은 관련소득(기타소득, 사업소득 등)을 제외한 금액을 강의 종료 후 일괄정산하여 강사 본인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.

제16조(준수사항) ① 강사는 진흥원 및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강사 직무연수 및 워크숍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강사의 책임으로 한다.

② 강사는 강좌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강좌 평가를 통해 부적합으로 결정된 경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향후 3년간 강사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강사는 강좌 진행 시 강의 진행 및 학습자 관리 소홀, 행정 업무 소홀, 강사 교육 불참 등 진흥원 및 해당 지자체에서 강사의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강좌를 폐강할 수 있으며, 차년도 강사선정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
④ 강사는 학습자 수료인원(수료기준: 출석률 70%)이 전체인원의 80%이상이 되도록 학습자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, 미달성 시 차년도 강사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
제5장 강좌선정 및 강사선정

제17조(강좌선정 및 배정) ① 강좌 선정방법 및 절차는 진흥원과 해당 지자체가 협의한다.

② 강좌 선정기준은 타당성, 지역특성, 참여대상, 프로그램 특성,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다.

③ 해당지자체는 강사 선정 시, '진흥원' 홈페이지에 강사로 등록되어있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.

④ 강사는 배정받을 수 있는 강좌를 1인당 연간 2개 강좌로 제한한다. 단, 부득이한 사유(거리관계 등)로 강사를 구할 수 없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.

⑤ 강사는 학습자의 강의평가를 통한 만족도 점수가 저조(60점 이하)할 경우 향후 강사선정 시 배제할 수 있다.

⑥ 강사가 학습자대표로 강좌를 신청한 경우 해당 강좌의 강사 활동을 할 수 없다.

제18조(현장점검) 투명하고 공정한 강좌 운영을 위해 현장점검은 사전 알림 없이 불시에 진행할 수 있다. 그 결과에 따라 강좌가 취소 또는 중지 될 수 있으며 향후 강좌 및 강사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.

제19조(강좌폐강) ① 학습자의 출석률이 3회 연속 70%미만일 경우 강좌를 폐강할 수 있다.

② 단, 학습자가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을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6장 보칙

제20조(지도 및 관리) ① 진흥원은 강좌나르미 운영의 총괄관리하며,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해당 지자체는 강좌나르미 운영, 강좌 및 강사 선정, 강좌운영관리, 사업비를 해당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, 개인정보 관리 등의 책무를 다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(폐강, 재선정 등)이 있을 시 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한다. 또한, 강의장소로 경남배움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한다.

③ 강좌운영에 문제 발생 시 진흥원은 해당 지자체에 개선 및 폐강 등을 요청할 수 있고, 해당 지자체는 이에 협조한다.

④ 진흥원은 해당 지자체에 보고와 협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.

제21조(시스템 사용) 해당 지자체는 진흥원 누리집의 강좌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강좌를 운영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얻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재단법인 출범 이전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「방방곡곡 학습공감(共感)강좌나르미」 운영규정을 준용한다.